

2017년 하반기 창업지원 휴직 시행

□ 추진목적

- 재직 중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별 역량 개발 및 경력 전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부여

□ 주요내용

- 지원 자격: 실근속기간 20년 이상 직원 중 희망자
 -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
 - 교육파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
- 대상분야: 제한 없음(개인이 희망하는 모든 창업분야)
 - 의무 휴직기간: 1년 6개월
 - 기간연장: 본인 희망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연장 가능
- 급여: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후 기간은 무급 휴직
- 신청방법: 희망자가 신청서류 작성 후 시스템 등록
 - 제출서류: 창업지원 휴직 신청서, 사업계획서
 - 등록: ERP→HR→개인업무→인사정보→휴직/퇴직신청→창업지원휴직 신청
- 선발절차
 - 1차: 사업계획서의 사업성, 준비도, 창업가 정신 등 평가
 - 2차: 1차 통과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등 고려 적합/부적합 검증
- 일정

구분	일자	비고
공고	10.16(월)	전사문서
희망자 신청	10.16(월)~23(월)	ERP시스템
1차심의	10.24(화)~25(수)	소속기관
2차심의	10.26(목)~10.27(금)	인재경영실
1일 워크숍	10.30(월)	인재경영실
휴직발령	11.01(수)	소속기관

○ 휴직기간 및 처우

- 휴직기간: 1.5년 ~ 3.5년 (의무휴직기간: 1.5년, 6개월 단위 연장)
- 급여: 최초 1년간 월 기준급+역량급 100%만 지급, 이후 무급휴직)

○ 운영

- 증빙서류 제출(의무사항)
 - 휴직발령 후 1년 이내: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 계약서
 - 휴직발령 후 1년 이후: 반기 익월 진행상태 보고
 - 의무휴직기간(최초 1년 6개월)중에는 복귀 불가
 - 휴직기간 추가 연장 희망 시 휴직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
 -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
 - 유급 휴직기간은 재직자와 동일한 복지 지원
 - 휴직기간 중 희망시는 의원면직 가능
- ※ 주의사항: 휴직기간 창업과 무관한 활동을 할 경우 인사조치 가능

○ 기타사항

- 창업지원 휴직은 회사가 창업희망자에게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, 업종결정, 사업실행 등 창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창업지원 휴직 신청자의 책임하에 추진함이 원칙
- 의무교육시행: 창업지원 휴직 선발자에 한해 1일 워크숍 시행